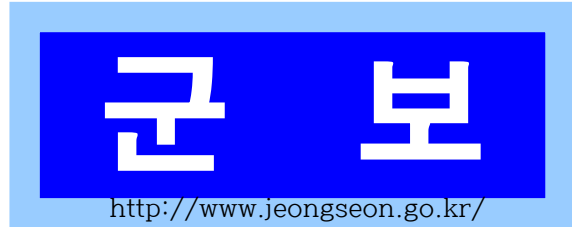
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382호 2016. 2. 15. (월)

【규 칙】

- 정선군 규칙 제1268호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1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(전화:560-2224, FAX:560-2592)

규 칙

2016년도 제1회 정선군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심의·의결된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6년 2월 15일

정 선 군 수



정선군 규칙 제1268호

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

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”을 “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당 직 수 당

구 분	금 액	비 고
일·숙직 근무의 경우	60,000원	
재택당직 근무의 경우	30,000원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</u>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, 도난,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<u>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</u> 제1조(목적) ----- 「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개 정 이 유

- 당직근무 이후 익일 본연의 업무로 인한 대체휴무 등의 어려움으로 당직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,
- 당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당직수당을 인상하고자 정선군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주 요 내 용

- 규칙 제명 띄어쓰기
 - “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”
⇒ “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”
- 당직수당 인상 및 상수도 시설지 근무자 당직수당 삭제(별표 1)
 - 현행 50,000원 ⇒ “60,000원”으로 인상